

프츠마이스터 제품 판매 및 공급 조건 (2021)

제1조 적용 범위

1. 본 계약은 계약의 제목이 매매 계약, 업무 및 서비스 계약 또는 다른 이름의 계약인 지와 무관 하게 매도인의 모든 기계 기타 거래 목적물의 납품에 적용된다.
2. 본 계약상의 매매 및 인도 조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본 계약에 반하는 매수인의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계약상의 판매 및 인도 조건은 매수인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향후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2조 계약 체결 및 수정과 권리의 양도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사진, 도면 등의 문서 상에 표시된 인도, 외관, 성능, 치수, 무게, 운영 재료 소비, 운영 비용 등에 관한 데이터는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대략적인 값에 불과함으로 확인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비용 견적, 도면 기타 문서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존중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만약 매도인이 요청하면 매수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계약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주문에 대한 승낙을 확인하였거나 인도 또는 이행에 착수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만약 매도인이 기간을 정한 청약을 한 경우, 계약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청약을 서면으로 승낙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구두 계약 및 계약의 개정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효력이 없다. 다만 명백한 철자 또는 계산상의 오류는 소급하여 수정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 가격

1. 가격은 납품 포장비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다. 가격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납품 당일에 유효한 매도인의 가격표상의 가격을 적용한다.

2. 매수인은 엔지니어 작업,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 비용은 정액 요금 또는 출장 비용을 포함한 실제 지출 비용 및 해외근무수당(외국인 기술자의 경우)과 야간, 휴일 근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본 계약 체결 후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납품 당일의 유효한 가격표상의 가격 이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가격표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목적물의 납품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4. 가격에 포함된 비용과 수수료가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인상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상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재고가 있는 경우 본건 목적물을 교환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액과 본 계약상의 가격의 10.0%를 더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교환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 10.0%의 추가 금액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지급과 지급의무 불이행

1.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본 계약 대금을 본건 기계를 인도 받는 날에, 예비 부품의 대금은 30일 이내에, 서비스 수수료는 송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공제 없이 지급한다.

2. 아래 각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채무에 대하여 그전에 지급기한 연장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1) 매도인에 대한 채무의 5일 이상 지급 지체
- (2) 매수인의 자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 (3) 매수인 발행의 환어음/수표의 부도 기타 지급 불능 또는 지체
- (4) 매수인의 채무 초과
- (5) 매수인에 대한 무역, 금융 또는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 강등

- (6) 매수인의 파산 또는 회생 신청서의 제출, 또는
- (7) 기타 매수인의 신용도를 실질적으로 저하하는 사유의 발생

이 경우 매도인은 추가적인 인도나 작업의 수행을 거절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당사자간 어음 거래는 특약에 따른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본 계약 상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 금액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 한다. 이 조항은 매도인의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5. 매수인이 상기 제2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악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제는 매도인 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추가적 법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 납품 시기, 부분적 성과, 인수 지연 및 해제

1. 납품 및 설치 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의 모든 조건과 이행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청약을 확인할 때까지는 개시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매수인이 문 서나 자료의 제공, 허가 또는 허용 등 본 계약상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된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정지된다.

2. 본건 기계가 인도 기한 전에 작업장에서 출발하였거나, 선적준비완료 통보를 한 경우에는 납품 기간은 지켜진 것으로 본다.

3.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항력 등 예측하고 예방할 수 없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도 극복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지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매도인에게 원료, 부품 등을 공급하는 선행 공급업체에게 불가항력, 파업, 공장 폐쇄 등 매도인 이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본건 목적물의 납품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도인의 납품 기간은 합리적 기간동안 연장된다. 매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행 공급업체의 불이행, 이행 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제1문에 따라 납품 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영역 또는 매수인의 이행 조건(매수인 개인 또는 인도 받을 국가에 관한 조건 등)에 속하는 사유로 인하여 원료, 부품 또는 새시의 조달 등 매도인의 이행에 필요한 선행 공급업체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5.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이나 다른 계약 또는 다른 법적 이유로 인해 매도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6. 일부 이행은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러한 일부 이행은 독자적인 거래로 서 그 이행에 대하여 매도인은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매수인이 지급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합의되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그 이행을 합리적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된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시리즈 제품 주문 총량의 25.0%, 개별 제품 주문 총량의 75.0%의 금액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추가적 입증 없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어떤 손해도 없거나 손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불구하고 매도인은 약정손해금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발생한 보관 및 유지관리 비용 또는 송장 금액의 월 0.5%의 비율에 의한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손해나 비용만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정액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매도인이 계약 이행은 무역에 관한 국내외의 법률이나 금수 조치 기타 제재 등의 규제에서 비 롯되는 장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 위험의 이전, 선적 및 인수

1. 본건 목적물에 관한 위험은 늦어도 인도할 목적물이 발송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부분 이행, 매수인이 선적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직접 인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에도 같다. 매도인은 가장 유리한 운임이나 운송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2. 매도인의 과실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 선적 또는 인수를 지체하는 경우, 목적물 자체에 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 저하, 분실 위험 등 모든 위험이 선적 완료 또는 선적준비완료 통보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매수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운송되는 목적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정하는 부보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은 인도 목적물의 인수 중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예: 샘플링, 이행되어야 할 인수 절차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매수인은 인도받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이를 인수할 의무를 지나 그 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1.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 받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만약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또한 사용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포함하여 시운전 전에 인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안전 및 하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목적물에 사용 적합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경미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사용과 작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나 그에 관한 우려를 명시하여 매도인에게 즉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교환 인도를 포함하여 매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구제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매도인에게 부여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2. 위험 이전 시점에 매도인의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재량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가 없는 목적물로 교환하여 인도하는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체된 부품은 매수인의 소유가 된다. 하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최종적으로 실패하였거나,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경우, 또는 매도인이 하자보수 또는 교환 조치를 모두 거부하였거나, 매도인에게 부여된 후속 조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하자를 거짓으로 은폐하거나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4. 매수인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하자를 치유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매도인은 그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한 매수인 또는 제3자의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작동 안전이 위협받거나 부당하게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특히 지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필요한 비용만 변상할 의무를 진다.

5. 매도인은 특히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어떠한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증의무를 지지 않는다.

(1)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사용 또는 하자가 있는 설치나 시운전

(2) 자연적인 마모

(3) 매수인 또는 제3자의 하자가 있는 또는 부주의한 취급 혹은 부적절한 유지 보수

(4) 기타 매수인 또는 제3자의 과도한 부하, 부적절한 작동 재료 및 교체 재료의 설치, 열악한 작업, 부적절한 파운데이션, 화학적, 전기 기술/전자적 또는 전기적 영향

위 제외 조항은 매도인이 제8조 제5항의 보다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취한 다음과 같은 조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매도인은 담보책임이나 보증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적절한 하자 구제, 매도인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물의 변경, 부품, 특히 매도인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삽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예비 부품의 추가 및 삽입, 작동 지침의 미준수.

6.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미리 결정한 사양을 기반으로 획득한 재료 또는 매수인이 미리 결정한 디자인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7. 매도인은 중고 기계, 장치 또는 부품의 판매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중고 기계 및 부품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성능 측면에서 새로 제조된 기계 및 부품과 품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기한다.

8. 후속 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의 인도 후 1년, 정식 인수 또는 설치 후 1년, 정식 검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설치 완료 후 1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인도 목적물의 인수 또는 인도 및 이행의 검수가 매도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보증은 준비완료 후 12개월로 소멸된다. 이 조항은 후속 이행에도 준용된다.

매도인이 거짓으로 하자를 은폐하거나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한 경우, 이에 근거한 매수인 측의 청구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한이 적용된다.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시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매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하거나 손해의 배상이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9. 인도 목적물 자체에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기타 모든 추가적 청구권은 배제된다. 이 경우 제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8조 매수인의 해지,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의 제한

1. 위험 이전 이전에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최종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제외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고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하며 계약금액의 최대 15%를 넘지 못한다. 매수인은 동일한 품목의 주문에 대해 주문한 품목의 일부 수량의 인도가 불가능하고 매수인이 일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거나 매수인 측이 인수를 지연하는 동안 이행불능이 발생하고 매도인 측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을 유예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자신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매도인이 중과실을 범하지 않는 한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된다.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청구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사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손해로 제한되며 자연의 각 주간에 대해 0.5%, 자연으로 인해 적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체 인도 중 해당 부분의 가치의 최대 5%로 제한된다.

4. 상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하자로 인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일부이나 그 수행된 허락되지 않은 활동에 대하여는 본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매수인의 청구는 모두 배제된다. 특히 계약 해지 및 전보배상 청구, 비용 상환, 인도 목적 물 자체에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손해배상청구도 같다. 사전 계약 의무 위반 및 계약의 개시 또는 체결 시 수행된 무단 활동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다른 법적 이유로 인한 매수인의 모든 추가 청구권은 제외된다. 다만 매도인에게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책임 배제는 매도인이 과실 로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대한 의무라 함은 계약의 내용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그 위반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태 롭게 하는 의무이며, 또한 그 준수가 주로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하고 매수인이 정규적으로 그 준수를 신뢰하였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또한, 이 책임 배제는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책임의 배제는 개인 상해 또는 사적으로 사용된 물건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계약상이나 법률상의 책임과 달라 위의 조항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책임은 일반적인 사건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미 발생한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며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인도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제한은 인명, 상해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책임 제한은 의도 적으로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도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책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채무불이행 및 계약 이행 중 범한 불법행위에 기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청구권이 발생한 때 및 청구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채무자가 누구인 지를 알게 된 때로부터, 만약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청구가 발생한 연도의 종료 후 1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계약 체결 전 의무 위반 및 계약교섭 개시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수행된 무단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기타 법적 사유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된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7. 매도인에 대한 책임의 배제나 제한은 매도인의 대리인 및 피용자의 개인적인 책임에도 적용된 다. 매도인의 대리인과 피용자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의 시효는 상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제9조 담보

1. 인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합의된 대금과 매수인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향후 청구를 포함한 기타 모든 청구가 전액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유보된다.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소유권 유보는 매수인이 모든 어음 채무를 전액 결제할 때까지는 지속된다.

2. 매수인이 목적물을 전매하는 경우 그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목적물의 가치와 모든 2 차적 권리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이 양도와 무관하게 매수인은 상기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의 이 권리는 매도인이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스스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비즈니스 관계로부터 실현 가능한 담보의 가치가 채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담보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4.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한,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인도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 유보되고 제2항에 따라 채권이 매도인에게 유효하게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목적물에 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전적인 양도 등의 이례적인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제3자가 인도 목적물 또는 매도인에게 이 전된 질권 등의 담보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매도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는 동안에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제4조 제2항의 경우와 매수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전매 대금의 수령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회수 및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반환 받은 목적물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권리가 있는 청구권의 목록과 권리 행사에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 및 서류를 매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소유권이 유보된 동안 매수인은 인도 목적물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고용한 작업자가 즉시 모든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펌프 자동차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유보 기간 동안 차량 소유권 증서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8. 매도인이 인도 목적물의 소유권 및 질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계약의 해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유보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권 설정, 양도 담보 등 소유권 유보 또는 양도와 성격상 가장 가까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매도인이 매수인이 제공한 도면이나 모델, 샘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3자의 모든 청구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비용 및 지출을 매수인에 배상해야 한다.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제3자에 의해 제조 또는 인도가 금지된 경우 매도인은 작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 및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위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배상, 손실 보상 또는 비용 상환을 할 의무가 없다. 매도인의 기타 가능한 법적 청구 및 권리는 모든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수출 통제

계약상 해당 대외 무역 법규의 준수와 허가가 매도인의 책임이라면 매수인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매도인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인도 마감 2주 전까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언제든지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의 경우 매수인은 이 데이터, 특히 수출 통제 및 대외 무역 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해야 하며 늦어도 인도일 1주일 전에는 이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데이터의 부재, 결함 또는 지연 수신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규정 준수

매수인은 자신과 파트너, 이사, 감독 및 자문 위원회, 직원 및 기타 대리인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범죄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금지된 거래

매수인은 매수인과 그 파트너, 이사, 감독 및 자문 위원회, 직원 및 기타 대리인이 다음의 모든 경우의 매도인의 상품에 대한 거래를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 유럽연합규정 또는 미국 수출 규정에 따라 제재 목록에 등재된 개인, 조직 또는 기관과의 거래
- 금수 조치가 내려진 국가의 매수인과 거래하는 행위
- 필요한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 그리고
- 특히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또는 군사적 최종 용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래.

매수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소프트웨어 사용

매수인은 소프트웨어가 인도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문서를 포함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이 목적을 위해 의도된 납품의 대상에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수인은 둘 이상의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매수인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소프트웨어를 복제, 재작업 또는 번역하거나 목적 코드에서 소스 코드로 변환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본건 목적물상의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여 제조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복제본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및 문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매도인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있다. 매수인은 부여된 권리를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선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2. 본 계약의 이행 장소는 매도인의 공장으로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
4. 본 계약의 조항 중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프츠마이스터주식회사